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구제’제도 (‘emergency relief’ system)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ergency Relief’ System of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오원석*
Won-Suk Oh
김용일**
Yong-Il Kim

〈목 차〉

- I. 서 언
- II. 제37조의 내용과 적용사례
- III. 긴급구제의 절차
- IV. 긴급구제 판정의 집행
- V. 결 언

주제어 :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긴급구제, 임시적 처분, 긴급구제 판정의 집행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교신저자)

I. 서 언

오래된 역사와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이하 'AAA' 또는 '협회')는 법원을 이용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과 조직에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AAA는 미국 내에서의 중재나 조정 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 (이하 'ICDR' 또는 '센터')를 통해 국외까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AAA와 ICDR은 조정인과 중재인의 지정, 심리의 진행, 중재(조정) 과정을 통한 해결을 포함한 분쟁해결 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협회와 센터의 서비스는 분쟁사건을 중재와 조정을 통해 종결까지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AAA의 산하기관인 ICDR은 AAA의 모든 국제적인 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집행을 맡고 있으며, ICDR의 국제적인 시스템은 자질 있는 조정인과 중재인의 선정을 보장하고 비용의 관리, 문화적 차이의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조정과 중재규칙(International Mediation and Arbitration Rules)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ICDR은 전 세계의 많은 중재기관과 상호 협약을 맺고 있어서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당사자들이 AAA 중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서 작성 시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ICDR과의 직접 또는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ICDR의 긴급구제(emergency relief)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긴급구제는 ICDR 국제중재규칙(이하 'ICDR 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다. 동 조항의 제정배경 즉, 긴급구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중재 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를 신청한 직후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상대방이 기밀을 폭로하는 것을 막거나 고유자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해 둘 필요성 때문이다. 중재의 신청 시 또는 중재가 신청된 직후에는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당사자가 위와 같은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법원에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³⁾을 구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예컨대, 법원의 절차는 공개되어 있어 기밀이 일 반에 누설될 수도 있고,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

1) 추가적인 AAA 서비스는 기업, 연합, 정부기관, 법률회사와 법원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의 설계와 개발을 포함하며, 이와 더불어 이 협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을 원하는 개인과 조직을 위해 투표서비스, 교육, 훈련과 인쇄물의 발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ICDR 또는 AAA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www.adr.org)를 이용하거나 뉴욕, 바레인, 싱가포르 또는 AAA의 지역 사무소 중 한곳에 직접 연락 할 수 있다.

3) 'Interim Measure'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논자는 이 용어에 대해 한국중재법 제18조를 근거로, 이를 '임시적 처분'으로 번역·사용한다. 한국중재법 제18조 참조.

에 임시적 처분을 구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타국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ICDR은 중재의 신청 시점부터 중재판정부 구성까지의 민감한 시기에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년도에 AAA는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선택적 규칙(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했으며, 그 결과 동 규칙이 자주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06년 5월에 ICDR은 ICDR 규칙에 제37조를 추가하였는데, 이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동 조항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 한 긴급구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ICDR 규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광서·김재성 교수의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가 있다.⁴⁾ 동 논문은 임시적 처분의 법리에 관해 주요 국제중재규칙(UNCITRAL 모델중재법, ICC 중재규칙, LCIA 규칙)과 한국법제(민사집행법, 한국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특히 ICDR 규칙 제37조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긴급구제 판정(awards of emergency relief)⁵⁾의 집행에 관하여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ICDR의 긴급구제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효력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제37조의 긴급구제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미국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동 제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ICDR 규칙 제37조의 내용과 적용사례를 검토하고(Ⅱ), 동 규칙에 따라 긴급구제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지에 관한 고찰과(Ⅲ), 동 절차에 따라 내려진 긴급구제 판정의 집행에 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Ⅳ).

4) 박광서·김재성,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부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5) ICDR의 긴급구제에 관한 임시적 처분의 결정은 판정(award) 또는 명령(order)의 형식으로 내려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긴급구제 판정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그 구분이 필요한 곳에서는 판정과 명령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II. 제37조의 내용과 적용사례

1. 제37조의 내용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ICDR 규칙 제37조는 2006년 5월 1일 이후 중재조항을 두거나 중재합의를 한 사안에 적용한다.⁶⁾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구제가 필요한 당사자는 ICDR 관리국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긴급구제의 신청과 구제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긴급구제 신청서에는 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구제신청은 이메일, 팩스 또는 그 외의 믿을만한 수단으로 가능하다.⁷⁾

관리국은 신청서 수령 후 제1업무일 내에 AAA의 긴급중재인 명부에서 긴급구제에 대한 심리를 담당할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긴급중재인 후보자는 지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중재인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모든 사정을 관리국에 고지해야 한다. 중재인에 대한 기피(challenge)⁸⁾신청은 긴급중재인으로 선정된 중재인이 관리국에 알렸거나, 기피 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제1업무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⁹⁾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제2업무일 내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긴급구제의 진행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일정표는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공식심리(formal hearing)를 대신하여 전화 또는 서면심리도 가능하다. 긴급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하여 유지명령에 의한 구제와 조치들(injunctive relief and measures)과 같은 임시적 또는 보전적 조치(interim or conservancy measure)를 명령하거나 판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의 조치는 임시판정 또는 명령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러한 경우, 긴급중재인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판정과 명령을 수정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¹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나면 긴급중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중재판정부가 일단 구성되면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임시판정과 명령을 재고(reconsider), 수정(modify) 또는 무효(vacate)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

6) ICDR 규칙 제37조 (a). 장래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계약 시에 합의하는 계약 조항을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라 하며,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 Agreement)이라 한다. 전자를 사전합의, 후자를 사후합의라고도 한다.

7) ICDR 규칙 제37조 (b).

8) 중재인 기피(challenge)란 당사자가 특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재인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당사자가 중재인을 배척할 수 있는 이익을 중재인의 기피권이라고 한다.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재인을 해임할 수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배척하는 것이 기피인 것이다.

9) ICDR 규칙 제37조 (c).

10) ICDR 규칙 제37조 (e).

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¹¹⁾ 당사자가 법원에 임시적 조치를 구하는 것은 제37조 또는 중재합의 또는 중재권한의 포기 등과 양립할 수 있다. 만약 관리국이 법원으로부터 긴급구제 신청을 검토하고 보고하기 위한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¹²⁾를 지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관리국은 이를 진행해야 한다.¹³⁾ 긴급구제와 관련된 비용은 최종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것을 전제로 긴급중재인 또는 특별전문가가 결정한다.

2. 제37조의 적용사례와 범위

(1) 적용사례

이하에서는 ICDR 규칙 제37조가 적용된 네 가지 사례와 제37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먼저, 제37조가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는 유럽 기업이 북미의 리서치 회사를 상대로 특정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s)의 발행 주체에 대한 공동판매합의 위반으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이다.(성과 사례). 신청인은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피신청인이 기밀정보를 이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두 번째 사례는 북미의 투자 회사가 유럽 회사를 상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인데, 신청인인 투자 회사는 유럽 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기술 사례).¹⁴⁾

세 번째 사례는 북미의 방산업체가 남아시아 회사를¹⁵⁾ 상대로 독점대리점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독점계약 사례). 신청인은 특정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고, 분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 마지막은 구소련의 에너지 회사가 북미의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에너지장비 공급에 따른 합의 위반으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사례이다(에너지 사례).¹⁶⁾

11) ICDR 규칙 제37조 (f).

12) 여기서 특별 전문가라고 함은 긴급중재인을 말한다.

13) ICDR 규칙 제37조 (h).

14)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인은 다양한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먼저, 신청인이 특정 재산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자임을 공표하는 것, 둘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그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 셋째, 피청구인이 자산을 해체(dissolving)하고 분배(distributing)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 넷째, 기탁계정(escrow account)을 만들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에게 분쟁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막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15) 동 회사는 주로 공학기술, 정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업체이다.

16) 동 사례에 관한 내용은 G. Lemenez & P. Quigley,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Part I: A Look at the Empirical Data," 63(3) *Disp. Resol. J.* (Web version, Aug.-Oct. 2008), pp.2-3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2) 제37조의 적용범위

제37조 a항은 2006년 5월 1일 이후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에 따라 진행된 ICDR 규칙하의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37조는 당사자들이 동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중재가 개시되기 전, 즉 중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당사자의 합의로 ICDR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ICDR은 국제중재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특정 중재가 국제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UNCITRAL 모델중재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¹⁷⁾ 제1조 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¹⁸⁾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의 개념은 광의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ICDR 규칙(제37조를 포함하여)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국적이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분쟁을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4가지의 사례 중 3가지(기술 사례, 독점계약 사례, 에너지사례)는 2006년 5월 1일 이후 신청되었는데, 이들 중 제37조의 적용을 제외한 사례는 없었다. 에너지 사례의 경우 당사자 간의 중재조항이 명확히 ICDR 규칙을 지정하고 있었지만 기술과 독점계약 사례의 경우 특정 규칙의 지정 없이 AAA 중재를 신청하였다. 제37조를 포함한 ICDR 규칙은 위의 사례에 모두 적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분쟁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과 사례는 제37조가 제정되기 전인 2003년에 중재합의가 있었지만 분쟁은 제37조가 제정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이때 당사자가 합의로 제37조의 적용을 동의하였으므로 ICDR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긴급구제 절차를 진행하였다.¹⁹⁾

17) UNCITRAL 모델중재법(1985)은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은 이를 직접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모델법을 고려하여 자국의 중재법을 현대화하였다. 특히 영국중재법(1996)은 모델법과 국제상사중재실무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제정된 법이다. S. Pieter, THE WORK OF UNCITRAL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54; <http://www.uncitral.org/uncitral/en/index.html>.

18)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조 제3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국제중재로 본다. 첫째,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할 당시 상이한 국가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둘째, 다음 장소 중 어느 한 장소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국외에 있는 경우 (i) 중재합의에서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중재지 (ii) 상거래 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어야 할 장소 또는 분쟁의 본안사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소. 셋째, 중재합의의 본안사항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19) G. Lemenez & P. Quigley, *op. cit.*, p.3.

Ⅲ. 긴급구제의 절차

1. 긴급구제의 신청과 긴급중재인 선정

(1) 긴급구제의 신청

당사자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 ICDR 규칙 제2조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는 제37조에 의한 긴급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긴급구제 신청은 중재신청 다음이나 본안 중재신청과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 ICDR에 신청된 네 가지 긴급구제 가운데 두 사례는 중재신청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다른 두 사례는 중재가 신청된 후 몇 주 뒤에 신청이 이루어졌다.

긴급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은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의 긴급구제 신청은 ICDR 규칙 제23조²⁰⁾에 따라 일반 중재절차와 같이 진행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에 더하여 긴급구제 신청은 특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제37조 (b)는 “구제 신청의 요지와 구제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의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를 받아야 할 이유”도 포함시켜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긴급구제 신청의 네 가지 사례의 경우 각각 1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²¹⁾

(2) 긴급중재인의 선정

ICDR의 관리국은 제37조 (c)항에 따라 당사자들로부터 긴급구제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제1업무일 내에 긴급중재인 명부에서 자격을 갖춘 긴급중재인을 선정한다. 긴급중재인 선정 시 중재사건과의 연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긴급중재인이 즉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²²⁾ 위의 네 가지 사례 가운데 세 가지의 사례에서 긴급구제가 신청된 후 제1업무일 내에 긴급중재인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20) Article 23.

1. If a party fails to file a statement of defense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2. If a party, duly notified under these Rules, fails to appear at a hearing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3. If a party, duly invited to produce evidence or take any other steps in the proceedings,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make the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21)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긴급중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22) ICDR은 긴급중재인의 선정 시 당사자의 국적, 계약의 준거법과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는 중재인의 유용성(availability)이다. G., Dunning, et al., "Using Article 37 of the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btaining Emergency Relief," *Disp. Resol. J.* Vol.62 No.2 (2007), p.71.

지 하나의 사례는 선정된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가 있었다. 이 경우 ICDR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후 제1업무일내에 새로운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였다. ICDR의 긴급중재인 선정은 행정상의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ICDR은 긴급중재인의 선정에 앞서 당사자와의 전화회의(telephone conference)를 열 수 있다.

긴급중재인 후보자는 제37조 (c)에 따라 선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앞서 ICDR에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긴급중재인이 고지하는 사실의 수량과 선정의 수락이 이루어지면 ICDR은 당사자에게 긴급중재인의 선정과 선정된 긴급중재인이 고지한 사실을 통보할 것이다. 당사자는 관리국으로부터 긴급중재인 선정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제1업무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²³⁾ 또한 선정된 긴급중재인이 긴급구체절차 진행 중에도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를 고지한 경우, 고지 후 제1업무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37조는 기피를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긴급중재인의 기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위의 사례 가운데 에너지 사례가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가 있었던 사례인바, 긴급중재인이 선정된 이후에 공개된 사실 때문이었다. ICDR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피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1업무일의 시간을 준 것이다. 대응의 기회가 주어진 당사자는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가 이루어진 그 날 기피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류를 관리국에 제출하였다. ICDR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다음날 새로운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선정된 긴급중재인은 자진사임을 하였으며, 결국 ICDR은 긴급중재인 사임 후 제1업무일 이내에 세 번째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였다. 이 모든 과정, 즉 최초의 긴급중재인 선정에서부터 세 번째 선정까지 제5업무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²⁴⁾

(3) 절차의 진행

“긴급중재인은..... 선정 후 제2업무일 이내에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일정표는 당사자에게 “심리를 위한... 정당한 기회”를 주도록 작성되어야 한다.²⁵⁾ 그러나 정식심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더욱이 긴급 중재인은 전화회의나 서면 심리를 병행할 수도 있다.

위에서 소개한 네 가지 사례에서 ICDR은 긴급구체 절차에 대한 일정을 정하기 위해 긴급중재인 선정 후 며칠 뒤에 당사자와 긴급중재인과의 전화회의를 가졌다. 독점계약 사례, 성과 사례 및 기술 사례의 경우 긴급중재인은 최초의 전화회의에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진술을 요청했다. 특히 성과 사례에서 긴급중재인은 당사자로부터 추가적인 진술을

23) ICDR 규칙 제37조 (c).

24) G. Lemenez & P. Quigley, *op. cit.*, p.4.

25) ICDR 규칙 제37조 (c).

연은 후 두 번째 전화회의를 열었다. 전화회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ICDR의 화상회의 기술을 통해 증인을 채택하여 심리하였다. 이러한 심리와 당사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긴급중재인은 심리 또는 추가적인 전화회의 없이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신청 후 2주 만에 판정을 내린 것이다.²⁶⁾

에너지 사례의 경우, ICDR은 최초 지명된 긴급중재인에 대해 기피 절차를 진행하여 기피 결정을 하였으며, 기피된 긴급중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였다. 이후 두 번째 지명된 긴급중재인도 사임을 함으로써 긴급구제 판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새로 선정된 긴급중재인은 전화회의 등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국 세 번째 선정된 긴급중재인이 당사자와 최초로 회의를 가졌을 때, 당사자는 심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며칠 후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판정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긴급구제가 신청된 후 몇 번의 긴급중재인 선정과 기피 또는 사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2주안에 판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2. 긴급구제 판정과 종료

(1) 긴급구제 판정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게 행사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하여 유지명령에 의한 구제와 조치들과 같은 임시적 또는 보전적 조치를 명령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긴급구제에 대한 판정은 긴급중재인의 폭넓은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

성과 사례에서 긴급중재인은 피신청인의 기밀정보의 사용과 유출을 금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판정문에서 긴급구제를 승인하기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예컨대 손해배상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시비곡직(是非曲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마지막으로 긴급구제의 방법 외에 적절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이다.

기술 사례에서 긴급중재인은 2개의 신청은 인정하였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컨대 긴급중재인은 신청인이 특정 자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자임을 선언해 달라는 신청, 피신청인이 특정 자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기탁계정을 설정토록 명령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긴급구제의 목적은 시비곡직에 대한 결정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자산반환 신청이 거절된 이유는 신청

26) 독점계약 사례에서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끼리 합의한 후 긴급구제를 취소하였기 때문이다. 양당사자는 긴급구제를 신청함으로써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 사례에서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신청 후 2주 안에 서면심리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렸다.

인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탁계정 신청은 신청인이 시비곡직에 대해 낙관적인 예상을 할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되었다.²⁷⁾

독점계약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중재절차와 소송개시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긴급구제 신청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긴급 중재인은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례에서 본안중재 신청인이 제기한 분쟁지역으로부터의 장비의 이동에 대한 본안중재 피신청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본안중재의 신청취지)을 막기 위해 본안중재 피신청인이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는바, 긴급중재인은 본안중재 피신청인, 즉 긴급구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본안중재 피신청인이 장비가 제3자에게 리스 되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안중재 신청인은 이 구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신청에 대하여 판정²⁸⁾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당사자는 둘 중 하나의 형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긴급중재인의 몫이다. 위의 긴급구제 사례 가운데(독점계약 사례는 제외) 두 가지는 판정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명령의 형식으로 내려졌다.

(2) 절차의 종료

진술하였듯이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판정이나 명령을 재고, 수정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의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소멸한다. 이것은 긴급중재인이 판정이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본안중재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긴급중재인은 판정이나 명령을 내릴 권한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ICDR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²⁹⁾에서 제공하는 규칙³⁰⁾에서는 위의 쟁점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만하다. 이 규칙은 “특별 중재인이 판정 또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특별 중재인은 이런 판정과 명령을 내릴 권한을 유지하는데, 이는 중재판정부가 특별 중재인과 다른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긴급구제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ICDR 규칙에 따른 절차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긴급중재인에서 중재판정부로의 권한 이전의 시점을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³¹⁾

27) 긴급중재인은 피신청인의 자산 해체 등을 막기 위한 요청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3가지 조건이 만족되었기에 승인하였으며, 또한 분쟁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요청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

28) 여기에서의 판정은 앞의 모든 기술에서 긴급중재인의 판정과 명령을 포괄하였던 것과는 달리 긴급중재인의 판정(an award)과 긴급중재인의 명령(an order)을 구별한 것이다.

29) 이를 CPR 규칙이라 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cpradr.org. 참조.

30) Non-Administered Arbitration 규칙 14.13.

31) G. Lemenez & P. Quigley, *op. cit.*, pp.6-7.

3. 비용

ICDR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데에는 특별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용과 긴급중재인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재인에 대한 보수는 긴급중재인, ICDR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결정된다. 실무적으로는, ICDR은 이런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 적정한 보증금의 반을 각각의 당사자가 납부토록 요구한다. 나중에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부담은 제37조 (h)항에 따라 긴급중재인에 의해 당사자에게 할당되며, 최종적으로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재할당할 것이다.³²⁾ 결정이 내려진 세 개의 사례에서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는데 10시간 내지 40시간을 사용하였다.³³⁾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에서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며, 세 번째 사례에서는 긴급 중재인은 비용과 관련된 결정을 중재판정부에 맡겼다.³⁴⁾

IV. 긴급구제 판정의 집행

1. 문제의 제기

앞에서 제37조의 내용과 적용사례 및 긴급구제의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긴급구제에 대한 판정이 내려졌지만 당사자가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행거부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판정에 대한 해석을 왜곡한다든지, 단순히 긴급중재인의 판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긴급중재인의 판정이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의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긴급구제 신청인이 제37조에 의한 긴급구제 판정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Federal District)에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러한 긴급구제 판정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가에 관하여 검토할 것이다. 미국에는 제37조에 따른 긴급구제 판정 또는 다른 임시적 긴급구제 절차에 의한 판정에 대한 집행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판결은 없으므로, (본안)중재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 선정된 중재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임시적 구제의 집행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다.³⁵⁾

32) G., Dunning, et al., *op. cit.*, p.72 참조.

33) 시간의 편차는 신청 사건의 종류, 수,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

34) G. Lemenez & P. Quigley, *op. cit.*, p.7.

35) G. Lemenez & P. Quigley,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Part II: Enforcing Emergency Arbitrator Decisions," 63(3) *Disp. Resol. J.* (Web version, Nov. 2008-Jan. 2009). p.2.

미국 연방의 법률은 특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된 중재의 최종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첫째로, 중재판정의 집행력에 관한 준거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긴급중재인의 제37조에 의한 판정이 미국 법원에서 집행력이 인정되는 최종판정의 자격을 갖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37조의 판정이 집행력을 잃게 되는 예외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2. 미국 연방중재법과 뉴욕협약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국내중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판정에 적용 가능한 기본법으로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이 있으며, 국제중재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자간 국제협약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³⁶⁾이 있다.³⁷⁾ FAA 제2장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아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을 규율한다. 특히 Section 207에서는 뉴욕협약 제5조에 명시된 중재판정의 집행이나 승인에 대한 거부 또는 집행연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³⁸⁾

뉴욕협약에서 규정하는 국제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유는 “중재합의 당사자가 그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이다.³⁹⁾ 두 번째 집행거부 사유는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을 경우”이다.⁴⁰⁾ 세 번째 집행거부 사유는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로 하되,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⁴¹⁾ 네 번째 집행거부 사유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36) 뉴욕협약은 우리나라와 주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를 비롯하여 현재 145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집행에 관한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NYConvention_status.html. 참조. 2011년 2월 1일 최종 방문.

37) 뉴욕협약은 FAA의 제2장에 의해 미국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38) J. Kelly, “Confusion about ‘Manifest Disregard’ after the Hall Street Decision,” *Disp. Resol. J.* (Aug.-Oct. 2008), p.4.

39)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a호.

40)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b호.

4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c호.

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⁴²⁾ 집행거부의 다섯 번째 사유는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시키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이다.⁴³⁾

뉴욕협약 제5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이 신청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사유는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 하에서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이고,⁴⁴⁾ 두 번째 사유는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이다.⁴⁵⁾ 따라서 중재에 관련된 중재인 및 당사자들은 위에 나열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국 법원에 의해 집행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긴급구제 판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

많은 법원의 판결은 오직 최종판정만이 FAA나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⁴⁶⁾ 그러나 보통 임시적 처분은 현상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 즉, 본안 사건에서 분쟁의 결론에 따른 자산의 보호나 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ICDR 규칙 제37조 (f)항에서는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긴급중재인의 판정 또는 명령을 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7조의 긴급구제에 대한 판정은 일견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에 대해 심사숙고하던 미국 법원은 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보호처분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긴 하나, FAA와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을 위한 목적에서는 법률상으로 최종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Yonir Technologies v. Duration System*⁴⁷⁾ 사건에서 제2 순회법원은 그 관할 안의 수많은 지방법원들이 *prejudgement security*를 필요로 하는 임시판정은 사법심사를 조건으로 최종 판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최종판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인은 임시적 구제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⁴⁸⁾

42)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d호.

43)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e호.

44)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제a호.

45)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제b호.

46) *El Mundo Broadcasting Corp. v. United Steel Workers of Am.*, 116 F. 3d 7, 9 (1st Cir. 1997) (FAA); *Hall Steel Co. v. Metalloy Ltd.*, 492 F. Supp. 2d 215 (E.D. MICH. 2007).

47) *Yonir Technologies Inc. v. Duration Sys.*, 2002 WL 31681198 244 F. Supp. 2d 195, 213 (2d. Cir. 2002).

48) *Banco de Seguros del Estado v. Mutual Marine Office*, 230 F. Supp. 2d 362, 368 (S.D.N.Y. 2002).

이와 유사한 사례로, *Pacific Reinsurance Management Copr. v. Ohio Reinsurance Corp.*⁴⁹⁾ 사건에서 제9 순회법원은 (본안)중재의 목적과 관련된 자산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에퀴티상의 판정은 보통 최종 판정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Arrowhead Global Solutions v. Datapath Inc.*⁵⁰⁾ 사건에서 제4 순회법원은, 중재인은 잠정적 유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과 같은 종류의 일시적인 에퀴티상의 구제를 내릴 권한이 있으며, 지방법원은 에퀴티상의 구제를 위한 최종적인 것으로서 에퀴티상의 구제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분초를 다투는 이슈에 대한 자율성하의 판정”이라고 실시하였다.

그 다음해에 *Banco de Seguros del Estado v. Mutual Marine Office*⁵¹⁾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판정이 의미 있는 최종판정의 효력을 갖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재인의 종합적인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판례에서는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보호를 위한 명령적 구제와 조치’를 포함한 임시적 처분 또는 보호조치가 최종판정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 법원으로 하여금 중재판정 부에서 내린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집행력을 인정하게 하는 위와 같은 논리는 제37조하의 긴급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Arrowhead Global Solutions v. Datapath Inc.* 사건에서 언급한 ‘공정한 임시적 구제’처럼 제37조의 구제 또한 자산을 보호하거나 특정 행위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필요에 의하여 도입된 절차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기술 사례에서 긴급중재인은 특정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표에 대해 긴급구제 신청을 거절하였다. 긴급중재인은 필요한 구제만이 제37조에 의해 보호되며 그러한 구제가 본안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중재인은 판정이나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포괄하여 판정이라 하였으나, 만약 제37조에 따른 결정이 중재판정이 아닌 명령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여전히 집행을 목적으로 한 중재판정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일부의 견해는 중재판정만이 FAA와 뉴욕협약에 의해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명령은 사법적 집행력을 갖기엔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명령과 판정 사이의 형식적인 차이를 부정하였다.

*Publicis Communication v. True North Communications*⁵²⁾ 사건에서 명령 형태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집행신청이 있었다. 피신청인은 명령의 요지와 법적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시적인 명령은 FAA와 뉴욕협약 하에서 집행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49) *Pacific Reinsurance Management Copr. v. Ohio Reinsurance Corp.*, 935 F. 2d 1019, 1023 (9th Cir. 1991).

50) *Arrowhead Global Solutions v. Datapath Inc.*, 166 Fed. Appx. 39, 44 (4th Cir. 2006).

51) *Banco de Seguros del Estado v. Mutual Marine Office*, 344 F.3d 255, 262 (2d Cir. 2003).

52) *Publicis Communication v. True North Communications*, 206 F.3d 725, 728 (7th Cir. 2000).

명령이 최종적이거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판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인 중재판정에 대해 논의할 때 거듭 사용되는 '판정'이라는 단어가 용어의 선형적인 중요성과... (중략)... 최종판정을 확정하는 결정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명령은 FAA 하에 최종적인 판정이라고 되풀이했으며 단지 서류의 제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정이 최종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그 본질과 영향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⁵³⁾

생각건대, 위 판결은 '명령'이나 '판정'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시적'인지 '최종적'인 것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기초로 미국 법원은 ICDR하의 긴급구제 판정에 대해 그것이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4. 긴급구제 절차의 신속성과 긴급중재인의 재량권

(1) 긴급구제 절차의 신속성

제37조는 긴급구제에 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긴급구제 절차의 신속성에 대한 요구는 중재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과연 병립할 수 있을까? FAA Section 10에서는 중재인이 중요한 증거의 심리를 거절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한쪽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법원이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보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집행거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7조는 긴급중재인이 하루내로 지명되어야 하며 이 긴급중재인은 지명된 후 2일 이내 일정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⁴⁾ 앞서 기술한 네 가지의 긴급구제 사례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긴급구제 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대략 2주 안에 긴급구제 판정이 내려진 것을 보면 제37조의 취지가 빠른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37조에서 추구하는 신속성이 공정성을 해한다는 우려를 낳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37조 하에서는 일방적인 절차의 진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긴급구제의 신청 사실과 구제가 긴급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의 일정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심리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⁵⁵⁾

53) 재판부는 뉴욕협약이 FAA의 준거법 역할을 했으며 FAA에 적용된 결정의 논리가 뉴욕협약을 해석하는데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4) *Fotochrome Inc. v. Copal Co.*, 517 F.2d 512, 518 (2d Cir. 1975).

55) E. Foster & N. Elsberg, "Two New Initiatives for Provisional Remed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ticle

(2) 긴급중재인의 재량권

제37조는 긴급중재인에게 판정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당사자는 긴급구제 판정이 임시적, 보호 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님을 이유로 판정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법원에 긴급중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제 판정이 내려진 것인지, 권한의 사용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⁵⁶⁾

긴급중재인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심사하는 법원은 우선 제37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37조 (e)는 상황에 따라 긴급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처분 또는 보호조치를 명령할 넓은 범위의 재량권을 긴급중재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 재량권에 대해 존중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대해 사후에 비판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Island Creek Coal Sales v. Gainesville*⁵⁷⁾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인의 권한이 명백히 규정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중재인의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Banco de Seguros del Estado v. Mutual Marine Office*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재판정이 의미 있는 최종판정의 효력을 갖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재인의 종합적인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법원은 긴급중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임시적 처분이 그 목적인 현상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언

이상 본고에서는 ICDR 규칙 제37조 하의 긴급구제제도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긴급구제의 절차, 긴급구제에 관한 법리는 물론 미국 법원에서 이러한 판정의 집행력에 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었던 ICDR에 신청된 네 가지 사례는 제37조의 도입이 성공적이었으며 ICDR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긴급중재인의 선정은 단기에 이루어졌고 긴급중재인의 기피와 관련된 문제를 36시간 안에 해결하였다. 게다가 긴급구제 판정은 몇 주내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신속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긴급구제 판정을 받은 피신청인이 긴급중재인의 판정을 무시하거나 불복종하려고 하는 경우, 미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긴급구제 판정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rticle 37 of the AAA/ICD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3(5) *Transnt'l Disp. Mgmt* 4 (Dec. 2006).

56) *AT & T Technologies, Inc. v. Communications Workers of AM*, 475 U.S. 643, 651 (1986).

57) *Island Creek Coal Sales v. Gainesville*, 729 F.2d 1046, 1049 (6th Cir. 1984).

쟁점이었다. 미국 법원은 긴급중재인의 재량권과 그들이 내린 긴급구제 판정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긴급구제는 나중에 최종판정을 받을 때에 그 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신청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력한 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긴급구제는 긴급중재인에 의해 판정 또는 명령 형식의 임시적 처분이라 할 수 있음에도, 법원은 이 모두에 대해 최종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긴급중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내려진 판정이나 명령이 긴급구제 절차의 목적인 현상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들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적 처분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난 후,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이다. 하지만 ICDR의 긴급구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중재인에 의해 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분쟁에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예상되는바, 긴급구제의 이용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재조항 또는 중재부탁계약에 ICDR 규칙을 준거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광서·김재성,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 Dunning, G., et al., “Using Article 37 of the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btaining Emergency Relief,” *Disp. Resol. J.* Vol.62 No.2 (2007). Foster, E. & Elsberg, N., “Two New Initiatives for Provisional Remed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rticle 37 of the AAA/ICD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3(5) *Transnt'l Disp. Mgm't* 4 (Dec. 2006).
- Kelly, J., “Confusion about ‘Manifest Disregard’ after the Hall Street Decision,” *Disp. Resol. J.* (Aug.-Oct. 2008).
- Lemenez, G. & Quigley, P.,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Part I: A Look at the Empirical Data,” 63(3) *Disp. Resol. J.* (Web version, Aug.-Oct.

2008),

_____,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Part II: Enforcing Emergency Arbitrator Decisions," 63(3) *Disp. Resol. J.* (Web version, Nov. 2008-Jan. 2009).

Pieter, S., *THE WORK OF UNCITRAL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Redfern, A., et al.,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 Sweet & Maxwell (2004).

Sheppard, B. H. & Townsend, J. M., "Holding the Fort Until the Arbitrators are Appointed: The New ICDR International Emergency Rules," *Disp. Resol. J.* (May-July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Emergency Relief' System of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Won-Suk Oh

Yong-Il Kim

This article examin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7 of the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ssues that could arise if a party petitions a U.S. Federal Court to enforce an emergency arbitrator's Article 37 decision to grant pre-arbitration provisional relief.

On May 1, 2006, ICDR introduced a new procedure for the granting of emergency arbitral relief under its ICDR Rules. The procedure enables a party to apply for emergency interim relief before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tribunal to adjudicate the merits of the dispute. Instead, the application for emergency relief is considered by an emergency arbitrator appointed by the ICDR. In short, the ICDR has quickly appointed emergency arbitrator and resolved a challenge to an appointment within 36 hours. In addition, the emergency decisions have been issued within just a couple of weeks.

In particular, we looked at what would happen after Article 37 emergency relief is granted. Based on my examination of U.S. cases on the enforceability of interim awards and orders, We conclude that U.S. courts would enforce Article 37 interim measures, whether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emergency arbitrator as an interim order or award.

Where the situation warrants, arbitration executives should embrace and use emergency relief procedure of ICDR Rules.

Key Words : ICDR Rules, Emergency Relief, Interim Measures, Enforceability of Interim Awards